



### 작성 방법

1. ② "공급자 영업형태"는 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에 따라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 
1: 제조업자, 2: 수입업자, 3: 판매업자, 4: 임대업자
2. ③ "공급구분"은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(출고), 공급한 의료기기를 반품 받은 경우(반품), 의료기기를 폐기한 경우(폐기), 의료기기를 임대한 경우(임대), 임대한 의료기기를 회수한 경우(회수)에 따라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 
1: 출고, 2: 반품, 3: 폐기, 4: 임대, 5: 회수
3. ④ "공급형태"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형태에 따라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 
1: 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
2: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  
3: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공급한 경우  
4: 견본품, 기부용 또는 군납용 등으로 공급한 경우
4. ⑦ "요양기관기호"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5. ⑫ "표준코드"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제8호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(UDI)를 적습니다.
6. ⑬ "제조번호"는 제조단위번호 또는 제조일련번호를 적되, 두 개 모두 있는 경우는 모두를 적습니다.
7. ⑮ "포장단위"는 의료기기가 공급된 포장단위를 적되, 포장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개별 유통될 수 있는 최소 포장단위를 적습니다.
8. ⑯ "포장단위 내 수량"은 의료기기 포장단위별 제품 총수량(포장 내에 들어간 날개 단위 총수량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9. ⑰ "공급수량"은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공급한 수량을 적습니다.
10. ⑲ "공급금액"과 ⑳ "공급단가"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(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를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되, 의료기기 판매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서 단위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.